

대구광역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921
----------	------

발의년월일 : 2021. 3. 5.
발 의 자 : 김성태 의원
안경은 의원
윤영애 의원
이만규 의원
이시복 의원
이태손 의원
정천락 의원

1. 제정이유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제정의 목적(안 제1조)
- 나. 이동노동자 복지증진 사업(안 제5조)
- 다.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안 제6조)
- 라.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안(안 제7조)

3. 참고사항

- 1. 예산조치 : 관계부서와 협의 필요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노동자"란 학습지 교사, 택배, 배달, 대리운전 종사자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지역 내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동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관련 조사·연구

2. 이동노동자의 법률, 노무, 취업, 교육 등 처우 및 인식개선
3.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및 노동환경 개선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휴식, 휴게 및 대기공간 제공
2. 법률,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복지서비스 제공
3. 취미 및 문화 활동 지원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요 거점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성별에 따라 휴식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을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 및 재정지원) ① 시장은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